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플러스알파단기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고유재산 투자관련 사항 정정
효 력 발 생 일	2022년 11월 23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 - <u>전자단기사채</u>	- <u>재무상태표</u> - <u>단기사채</u>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 - <u>전자단기사채</u>	- <u>재무상태표</u> - <u>단기사채</u>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3영업일(D+2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<u>2022.11.23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, 고유재산 투자관련 사항 정정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생략) 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</u>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<u>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</u>

		<p>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④ ~ ⑩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u>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p> <p>④ ~ ⑩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고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u></p> <p>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 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-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 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</p>

		<p>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4) (생략) 나. 환매 (1) (생략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(이하 생략)</p>	<p>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(4) (현행과 동일) 나. 환매 (1) (현행과 동일)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3영업일(D+2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	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- 보수 및 수수료 부분 비용 관련 주석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이익배분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가. 이익배분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		나. 과세 (생략)	나. 과세 (현행과 동일)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2022.11.08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의무해지 (생략) -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	-의무해지 (생략) -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정기보고서 (1) (생략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	가. 정기보고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자산운용보고서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

		<p>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<p>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</p>	<p>고유재산 투자관련 사항 정정</p>	<p>가. 의무투자 (생략) 나. 고유재산 추가투자 - 투자금 회수계획 :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,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. (단,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드 수탁고의 5%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) <u><신설></u></p>	<p>가. 의무투자 (현행과 동일) 나. 고유재산 추가투자 - 투자금 회수계획 : 투자금 회수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익구조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,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 투자신탁의 적정 설정규모 달성 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될 예정입니다. (단, 회수시점에 투자금액이 펀드 수탁고의 5%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) <u>① 1회차: 50억원 (2022.11.21 환매청구)</u> <u>② 2회차: 48억원 (2023.02.21 환매청구)</u></p>

<끝>.